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034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김동아·김남근・민병덕

최기상・김우영・조 국

백승아 · 김용민 · 김현정

김성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선만이 명시되어 있어 실제 판결에서는 최대 배상 범위만큼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지 않는 등 권리자의 피해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여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 권리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6항 중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를 "배상액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을 "법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 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6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u>넘지 아니하는</u>	<u>배상액으로 정한</u>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	<u>다</u> .		
<u>다</u> .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	⑦ 법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u>단할 때에는</u> 다음 각 호의 사	<u>고려하</u>		
항을 <u>고려하여야 한다</u> .	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